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

제295호 2012. 11. 16(금)

-	훈 령									
○ ×	사천시 훈	청 제263	호 사천시	] 공간정.	보 보안괸	리규정 역	일부개정국	구정		2
	고 시									
○ ×	사천시 고기	시 제201	2-170호	사천 미	룡일반산역	업단지•	고시 및 기	지형도면	고시 …	6
○ ×	나천시 고/	시 제201	2-178ই	용정천	하천점용	허가사항	고시 …		•••••4	.0
○ ×	나천시 고/	시 제201	2-179호	공유수면	면 점용·사	용 변경하	허가사항	고시	4	1
○ ×	·천시 고/	시 제201	2-180호	공유수면	면 점용·사	용 실시기	계획 공사	완료 신고	2수리사형	}
				고시 …					4	4
$\bigcirc$ $\wedge$	사천시 고기	시 제201	2-185호	사천강	하천점용	허가사항	고시		4	:5
	<b>공 고</b> 나천시 공	고 제201	2-715호	사천시 .	도로명주:	소위원회	심의결과	- 공고 …	46	)
호										
- 람										
	1		I					l .	I	I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제295호(2)

# 훈 령

## 사천시 훈령 제263호

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2년 11월 13일

# 사천시장 정만규

#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[별표 1]

#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(제13조 관련)

등급		분 류 기 준
	기준	∘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◦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
		<b>〈항공사진〉</b> 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
비 공		<b>〈위성영상〉</b> ∘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
개	공간 정보	〈수치지도〉 ○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
		<ul> <li>⟨기타공간정보⟩</li> <li>∘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</li> <li>∘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</li> </ul>
	기준	○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공간정보 ○공개 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○공개 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되 는 공간정보
공 개 제 한	공간	〈항공사진〉 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 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○2차원좌표(緯經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○3차원좌표(緯經·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
	정보	〈위성영상〉 ○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 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○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

### 제295호(4)

등급		분 류 기 준
공 개 제 한	공간 정보	〈수치지도〉         ○군사 지도         ○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       ○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        ○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       - 전 력: 발전소, 변전소, 지상송전선, 송전탑         - 상수도: 저수탑, 취수탑, 급수탑, 수문, 댐, 지상송수관, 지상용수관, 양배수장경계, 양배수장 기호         - 가스관: 지상가스관         - 송유관: 지상송유관, 저장소         - 그 밖의 관: 그 밖의 수송관         - 맨 홀: 공동구맨홀, 송유맨홀, 가스맨홀, 전기맨홀, 통신맨홀, 전화 맨홀, 기타맨홀(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)         - 특정건물: 교도소, 구치소,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       〈기타공간정보〉         ○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       ○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
	기준	∘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이외의 지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 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지리정보
공개	지리 정보	(항공사진) 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 "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·토지 소유자, 법 제2조 4항의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,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.  * 단, 국정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~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 할 수 있다.

제295호(5)

등급		분 류 기 준
광 개	지리 보	<ul> <li>〈위성영상〉</li> <li>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 자료</li> <li>●촬영 당시 위성자세장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        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        * 단,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</li> <li>〈수치지도〉</li> <li>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 대상 이외의 지도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        * 단, 1:1,000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 유지</li> <li>〈기타지리정보〉</li> <li>●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</li> </ul>
		○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영상자료  * 토양지질도, 도시계획도, 도로건설계획도, 지번도, 전자해도 등  ○ "비공개" 및 "공개제한"이 아닌 공간정보

제295호(6)

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2 - 170호

##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

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」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2년 10월 25일

#### 사 천 시 장

#### □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계획

#### 1. 산업단지의 명칭

○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

#### 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

○ 경상남도에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조성과 적 기공급, 서부지역 성장유도, 산업단지조성에 의한 고용창출, 소득증대 등을 통해 사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3.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-3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41,823 m²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7)

#### 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

가. 개발기간 : 승인일로부터 2013. 12. 31.까지

나. 개발방법 : 실수요자개발방식

#### 5. 주요 유치업종

O 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

### 6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가. 사업시행자 : 삼원전기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임 기 오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26-12

#### 7.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

가. 지목별 현황

구 분	합 계	장	도	잡	제	임	대	구	답
필지수	24	2	2	2	1	9	5	2	1
면적(m²)	41,823	10,331	504	13,103	893	8,017	8,598	194	183
구성비(%)	100	24.7	1.2	31.3	2.1	19.2	20.6	0.5	0.4

### 나. 소유자별 현황

				국유지			공유	우지		
구분	합계	소계	농림수산 식품부	국 토 해양부	기 획 재정부	한국농어 촌공사	소계	사천시	사유지	
필지수	24	13	2	2	8	1	_	-	11	
면적(m²)	41,823	19,924	214	1,257	18,333	120	-	-	21,899	
구성비(%)	100	47.6	0.5	3.0	43.8	0.3	-	-	52.4	

#### 제295호(8)

# 8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

## 가. 토지이용계획

		구	분			면적(m²)	구성비(%)	비고
		ヹ				41,823	100.0	
산	산 업 시 설 공 간				간	24,289	58.1	
지	원	시	설	공	간	2,611	6.2	
녹	지	시	설	공	간	6,979	16.7	
	녹				지	6,123	14.7	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
	공				원	856	2.0	소공원 1개소
공	공	시	설	공	간	7,944	19	
	저	류	-	시	설	1,047	2.5	
	주		차		장	894	2.1	노외주차장 1개소
	도				로	6,003	14.4	

# 나. 기반시설계획

- 1) 교통시설
- 가) 도로
- O 도로 총괄표

= H	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류 별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 수	연장	면적	노선 수	연장	면적	노선 수	연장	면적	
합계	3	598	6,003	1	67	689	1	400	4,774	1	131	540	
중 로	2	531	5,314	_	_	-	1	400	4,774	1	131	540	
소 로	1	67	689	1	67	689	-	_	_	1	-	_	

제295호(9)

### O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		규	모			연장	, ,		사용	주 요	최 초	
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경과지	결정일	비고
신 설	중로	2	22	17.5	국지 도로	400	노룡동 975-2	노룡동 975-2	일반도로	-	-	
신 설	중로	3	18	13	국지 도로	131	노룡동 975-2	노룡동 354	일반도로	_	-	
신 설	소로	1	82	10	국지 도로	67	노룡동 888-3	노룡동 888-3	일반도로	_	_	

## 나) 주차장

O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7.19	도면표시	시 설 명	위 치		면 적(m²)	최 초	비고	
구분	번 호	시설병	T A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신설	17	주차장	노룡동 888-3번지 일원	-	증)894	894	-	

## 2) 공간시설

## 가) 녹지

O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시설명	시설의 세분	o) ج)	면 적(m²) 위 치		최초	비고	
1	번 호	시결정		F N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-135
신설	16	녹지	완충녹지	노룡동 975-2 일원	ı	증)1,982	1,982	_	
신설	17	녹지	완충녹지	노룡동 975-2 일원	-	증)1,934	1,934	_	
신설	18	녹지	연결녹지	노룡동 354 일원	-	증)2,459	2,459	_	

#### 제295호(10)

#### 나) 공원

O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7 13	도면표시	고이버	공원명 시설의 세분	위 치 -	Ę	변 적 (m²	최초	חן יי	
구분	번 호	공원명		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신설	25	미 룡 공 원	소공원	노룡동 888-3번지	_	증)856	856	-	

#### 3) 유통공급시설

가) 수도공급설비

O 용수량

구 분	용 수 수 요 량 (m²/일)	비고
계	97.0	
공 업 용 수	83.6	계획용수량 : 97m³/일
생 활 용 수	13.4	

※ 사업부지와 인접한 미룡마을 상수도 D150mm에서 D100mm로 분기하여 사업부지로 공급 계획.

#### 4) 방재시설

가) 유수지

O 유수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시설명	시설의	위 치		면 적(m²)	)	최초	비고
1 &	번 호	기설명	세분	77 (1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미끄
신설	1	유수지	저류 시설	노룡동 975-2 번지	-	증)1,047	1,047	-	

제295호(11)

- 5) 환경기초시설
  - 가) 수질오염방지시설
  - O 오·폐수량

구 분	오 . 폐 수 량 (m²/일)	비 고
계	62.6	
생 활 오 수	30.7	계획오수량 : 35㎡/일
산 업 폐 수	31.9	

※ 산업폐수는 전량 위탁처리, 생활오수는 삼천포 하수종말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계획.

#### 9. 재원조달계획

- 가. 자금조달계획
  - 총 사업비 5,249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,192백만원, 금융권 대출자금으로 2,507백만원 투입
- 나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구 분 계		2013	
계	5,249	3,249	2,000	
용지비	2,094	2,094		
조 성 비	2,955	955	2,000	
기타비용	200	200	_	

10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: "붙임"

#### 제295호(12)

#### 11. 유치업종 배치계획

구 분	업 종	면 적(m²)	구성비(%)
계	-	24,289	100.0
제 조 업	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	24,289	100.0

## 12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: 해당없음

## 13.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

#### 가. 개발되는 토지

구 분	면 적 (m²)	구성비 (%)	비고
총 계	41,823	100.0	-
산업시설공간	24,289	58.1	사업시행자에 귀속
지원시설공간	2,611	6.2	사업시행자에 귀속
공공시설공간	14,923	35.7	-
도로	6,003	14.4	사천시에 귀속
저류지	1,047	2.5	사업시행자에 귀속
주차장	894	2.1	사업시행자에 귀속
공원	856	2.0	사천시에 귀속
완충녹지	3,664	8.8	사천시에 귀속
연결녹지	2,459	5.9	사업시행자에 귀속

제295호(13)

# 나. 시설물

	구	<u>변</u>	규 격	수량	관리처분계획	비고
		중로2류	B=17.5m	400m	사천시에 귀속	
도	로	중로3류	B=13.0m	131m	"	
		소로1류	B=10.0m	67m	"	
		우수암거	2.0x1.0	220.5m	"	
		우수암거	2@2.0x2.0	24m	"	
		우수관	D400	490m	"	
		우수연결관	D200	230m	"	
		우수맨홀	원형1호	7개소	"	
우	수	우수집수정	0.8x0.8x1.8	6개소	"	
		우수집수정	3.0x4.8x2.5	1개소	"	
		우수받이	410x510x750	25개소	"	
		L형측구		616m	"	
		우수저류지	26 x 11.5	1개소	"	
		비점원오염처리시설		1개소		
오	수	오수관로	D300	100m	"	
<u>.</u>	T	오수맨홀	원형1호	4개소	"	
상	· 수	송수관로	D50	274m	"	
Ö	ı	지 수 전		1개소	"	
		ASP포장		46a	"	
포	장	보도블럭포장	소형고압블럭	10a	"	
		자전거도로포장	탄성포장	5a	"	

### 제295호(14)

구	분	규 격	수량	관리처분계획	비고
	곤솔	H3.0XW1.2XR8	57주	"	
	소나무	H5.5XW2.5XR25	17주	"	
	섬잣나무	H2.5XW1.2	55주	"	
	배롱나무	H2.5XR6	14주	"	
	이팝나무	H3.5XR10	41주	"	
	모과나무	H3.0XR8	19주	"	
	팽나무	H3.5XR12	18주	"	
	산벚나무	H3.5XB8	15주	"	
7 7	광나무	H1.0XW0.3	2,044주	"	
조 경 -	협죽도	H1.0XW0.4	1,168주	"	
	화살나무	HO.8XWO.4	63주	"	
	수수꽃다리	H1.5XW0.6	35주	"	
	꽃댕강	HO.8XWO.5	170본	"	
	꽃잔디	10cm	500본	"	
	해국	10cm	325본	"	
	상록패랭이	10cm	175본	"	
	잔디	줄떼	3557 m²	"	
	소공원		1개소		
	막구조 파고라	H2.8XL4.2XB18.3	2조	"	
그 거 시 시 ㅁ	클로바 파고라	H2.2XL6.3XB6.3	1조	"	
조경시설물 -	육 각 정 자	H2.6XL6.0XB6.0	1조	"	
	평 의 자	L1.6XB0.6	40조	"	
	교통표지판		26개소	"	
교통안전시설	LED경보등		2개소	"	
	교통단속카메라		1개소	"	
구조물	전석쌓기		60m	"	

제295호(15)

# 14.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

-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  -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총괄

		7 W P		면 적(m²)		ען ד
		구 역 명	기 정	변 경	변 경 후	비고
		합계	464,366,055.7 (70,196,437.0)	-	464,366,055.7 (70,196,437.0)	( )는 해면부
		계	90,285,319.7 (4,380,437.0)	(증)21,604.0	90,306,923.7 (4,380,437.0)	( )는 해면부
		소 계	8,170,901.8	-	8,172,791.8	
		제1종전용주거지역	217,930.0	-	217,930.0	
		제2종전용주거지역	-	-	-	
	주 거	제1종일반주거지역	3,699,485.0	-	3,699,485.0	
도	지 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4,030,928.3	-	4,030,923.3	
	·	제3종일반주거지역	29,548.5	-	29,548.5	
		준 주 거 지 역	196,010.0	-	196,010.0	
시	상	소 계	1,221,550.0	-	1,221,550.0	
	업 지	일 반 상 업 지 역	1,103,040.0	_	1,103,040.0	
	역	근 린 상 업 지 역	118,510.0	-	118,510.0	
지	공	소 계	10,149,074.6 (3,193,637.0)	(증)21,604.0	10,170,678.6 (3,193,637.0)	( )는 해면부
	업 지 역	일 반 공 업 지 역	9,370,652.8 (3,193,637.0)	(증)21,604.0	9,392,229.8 (3,193,637.0)	
역		준 공 업 지 역	778,421.8	-	778,421.8	
		소 계	69,556,993.3	(감)8,551.0	69,548,442.3	
	녹 지	보전녹지지역	4,054,249.0	-	4,054,249.0	
	지 역	생 산 녹 지 지 역	7,490,649.0	-	7,490,649.0	
	٦	자 연 녹 지 지 역	58,012.095.3	(감)8,551.0	58,003,544.3	
	미	지 정 ( 해 면 부 )	1,186,800.0	(감)13,053.0	1,173,474.0	

#### 제295호(16)

		7 8 1		면 적(m²)		ul =
	구 역 명	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고
		계	374,080,736.0 (65,816,000.0)	-	374,080,736.0 (65,816,000.0)	( )는 해면부
		소 계	118,129,858.0	-	118,129,858.0	
刊	관	보 전 관 리 지 역	45,327,978.0	_	45,327,978.0	
도시	리 지	생 산 관 리 지 역	29,779,995.0	-	29,779,995.0	
기기기	역	계획관리지역	39,884,573.0	-	39,884,573.0	
역		관 리 지 역 미 분 류	3,137,312.0	-	3,137,312.0	
	7	등 림 지 역	167,146,995.0	-	167,146,995.0	
	ス	아 연 환 경 보 전 지 역	88,803,883.0 (65,816,000.0)	-	88,803,883.0 (65,816,000.0)	( )는 해면부

주)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08-618호(2008. 12. 4)참조

# 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m²)	구성비(%)	비고	
1 E	기 정	기 정 변 경 변경후		'8 H (%)	и) <u>л.</u>
합 계	41,823	41,823	41,823	100.0	
공 업 지 역	20,219	증)21,604	41,823	100.0	
일반공업지역	20,219	증)21,604	41,823	100.0	
자연녹지지역	8,551	감)8,551	_	_	
미지정(해면부)	13,053	감)13,053	_	_	-

제295호(17)

### 3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	위치	용도			용적률	결정(변경) 사유
번호	カヘ	기정	변경	( m²)	(%)	설정(현정) 사෦ㅠ
	사천시 _ 노룡동 975-2번	계		21,604		사천 미룡 일반산업 단지 지정에 따라 자 연녹지 및 관리지역 미분류 지역을 일반
-		자연녹지지역	일반공업지역	8,551	250	
	지 일원	미지정 (해면부)	일반공업지역	13,053		공업지역으로 변경하 고자 함.

# 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	구	역	玛	위	<b></b> え	면	적 (r	n²)	비고
一	번호	1	٦	· 6	TI	Λ	기 정	변 경	변경후	1111
신설	-	미룡일 지구딘			경상남도 노룡동 8 일		-	증)41,823	41,823	

## 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(m²)	결 정 사 유	비고
신설	-	미룡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-3번지 일원	41,823	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」에 의한 산업단지계 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를 위하여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 고자 함	

#### 제295호(18)

### 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1)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

		구	분			면적(m²)	구성비(%)	비고
		7	4			41,823	100.0	
산	업	시	설	용	지	24,289	58.1	
지	원	시	설	용	지	2,611	6.2	
녹	지	시	설	용	지	6,979	16.7	
	녹				지	6,123	14.7	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
	공				원	856	2.0	소공원 1개소
공	공	시	설	용	지	7,944	19	
	저	류	_	시	설	1,047	2.5	
	주		차		장	894	2.1	노외주차장 1개소
	圩				로	6,003	14.4	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(1) 교통시설

(가) 도로

O 도로 총괄표

= W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류 별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 수	연장	면적	노선 수	연장	면적	노선 수	연장	면적
합계	3	598	6,003	1	67	689	1	400	4,774	1	131	540
중 로	2	531	5,314	_	-	_	1	400	4,774	1	131	540
소 로	1	67	689	1	67	689	_	_	_	_	_	_

제295호(19)

### O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		규	모			연장			사용	주 요	최초	
구분	등급	류별	번 호	폭 원 (m)	기능	(m)	기 점	종 점	형태	경과지	결정일	비고
신설	중로	2	22	17. 5	국지 도로	400	노룡동 975-2	노룡동 975-2	일반도로	-	_	
신설	중로	3	18	13	국지 도로	131	노룡동 975-2	노룡동 354	일반도로	-	_	
신설	소로	1	82	10	국지 도로	67	노룡동 888-3	노룡동 888-3	일반도로	-	-	

## O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_	중로2-33	B=17.5m, L=400m (A=4,774m <sup>2</sup> )	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기반시 설용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하고자 함.
-	중로3-18	B=13.0m, L=131m (A=540 m²)	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용지 및 미룡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하고자 함.
-	소로1-82	B=10.0m, L=67m (A=689 m²)	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및 공용주 차장 진입을위한 도로로 결정하고자 함.

## (나) 주차장

### O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시설명	위 치		면 적(m²)		최 초	비고
十七	번 호	시설명	귀 시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끄
신설	17	주차장	노룡동 888-3번지 일원	-	증)894	894	-	

#### 제295호(20)

### O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17	주차장	주차장신설 (A=894㎡)	산업단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.

### (2) 공간시설

## (가) 녹지

## O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시설명	시설의	위 치		면 적(m²)	)	최 초	비고
干七	번 호	시설병	세분	T 4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끄
신설	16	녹지	완충녹지	노룡동 975-2 일원	-	증)1,982	1,982	_	
신설	17	녹지	완충녹지	노룡동 975-2 일원	-	증)1,934	1,934	_	
신설	18	녹지	연결녹지	노룡동 354 일원	-	증)2,459	2,459	_	

## O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 정 사 유
16	완충녹지	완충녹지 (A=1,982m²)	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 및 경관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함.
17	완충녹지	완충녹지 (A=1,934m²)	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 및 경관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함.
18	연결녹지	연결녹지 (A=2,459㎡)	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농지와 주거지역에 접하는 부분에 경관 및 차폐기능의 연결녹지를 설치하고자 함.

제295호(21)

### (나) 공원

## O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Эн	도면표시	7 0) rd	시설의	의 최	Ę	면 적 (m²	)	최초	יון ד
구분	번 호	공원명	세분	위 치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신설	25	미 룡 공 원	소공원	노룡동 888-3번지	_	증)856	856	-	

## ○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공원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25	미룡공원	소공원신설 (A=856 m²)	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의 휴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함.

### (4) 방재시설

## (가) 유수지

# O 유수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	시설명	시설의	위 치		면 적(m²)	)	최초	비고
ा स	번 호	기결정	세분	71 1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끄
신설	1	유수지	저류시설	노룡동 975-2번지	I	증)1,047	1,047	ı	

## O 유수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결정내용	결 정 사 유
1	유수지	저류시설 (A=1,047㎡)	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.

### 제295호(22)

### 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	1 - 1 ' '   LG		획 지	비고	
번호	번호	진 역(Ⅲ)	위 치	면 적(m²)	н т
-	A	24,289	사천시 노룡동 874 일원	24,289	산업용지
-			사천시 노룡동 975-2 일원	1,982	완충녹지
-	В	6,979	사천시 노룡동 975-2 일원	1,682	된 6 기시
-	Б	0,919	사천시 노룡동 354 일원	2,459	연결녹지
-			사천시 노룡동 888-3 일원	856	공 원
-			사천시 노룡동 975-2 일원	4,774	중로2-가 해안도로확장
-	С	6,003	사천시 노룡동 975-2 일원	540	중로3-가 마을도로확장
_			사천시 노룡동 888-3 일원	689	소로1-가 지원시설 진입로
_			사천시 노룡동 888-3 일원	2,611	지원시설
_	D	4,522	사천시 노룡동 975-2 일원	1,047	저 류 지
_			사천시 노룡동 888-3 일원	894	주 차 장
합	계	41,823			

제295호(23)

## 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						
		지정용도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								
		권장용도	기타운송장비제조업(31)								
		불허용도	권장용도 이외의 용도								
		건폐율	70% 이하								
-	A-1	용적률	250% 이하								
		높 이	4층 이하								
		배 최	-								
		형 태	-								
		색 채	-								
		건축선	-								
		지정용도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원시설								
										권장용도	직원전용식당, 체력단련장, 휴게실, 기숙사, 녹지 주차장
						불허용도	권장용도 이외의 용도				
		건폐율	70%이 하								
-	D-1	용적률	250%이 ਰੋ}								
		높 이	4층 이하								
		배 치	-								
		형 태	-								
		색 채	-								
		건축선	-								

#### 제295호(24)

### (계속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																	
		지정용도	「주차장법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																			
		권장용도	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																			
		불허용도	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																			
				건폐율	70%이 하																	
_	D-3	용적률	250%이 ਨੋ}-																			
										노 이	_											
												-									배최	_
														형 태	_							
					색 채	_																
		건축선																				

# 라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

- 1) 소공원
- 가) 공원조성계획
- □ 부지총괄표

구 분	시설명	위치		비고		
丁 屯	시설병	귀 시	기 정	변 경	변경후	1 11 12
합	· 계		_	856	856	
신 설	도로 및 광장	노룡동	_	170	170	
신 설	편익시설	888-3번지	_	43	43	
신 설	공원녹지		_	656	656	

제295호(25)

### □ 시설총괄표

7. 13	구분 시설명		시설규	비고	
丁 ゼ	시설병	면 적(m²)	바닥면적	연면적	비끄
	합 계		-	-	
신 설	도로 및 광장	170	_	_	산책로, 광장
신 설	편익시설	43	-	-	파고라, 정자
신 설	공원녹지	656	-	-	녹지

# □ 일반시설별조서

¬ н	도면	) A H	면 적	ار ا	시설규모(m²)			w =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ハ a で (m²) ガ ハ	표시 시설 등 (m²) 위시 번호	시설명 면적 위치 (m²)	건축 면적	연면적	층수	비고
	합 계		856		_	-	-	
도로 및 광장	1	산책로 및광장	170	노룡동	_	-	-	
편익시설	2	편익시설	43	888-3번지	_	-	-	
공원녹지	3	공원녹지	656		_	-	-	

# 지 구 단 위 계 획 시 행 지 침

제1장 총칙
제2장 산업시설 용지
제3장 주차장 용지
제4장 지원시설 용지
제5장 기타사항
제6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

#### 미룡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#### 제1장총 칙

#### 제1조 (목적)

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되는 "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"에 적용하며,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여내의용도지역·지구, 도시계획시설, 가구 및 획지, 건축물의용도·규모·배치·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,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제함을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지침의 적용)

본 지침은 미룡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에 적용한다.

#### 제3조 (지침의 구성)

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6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 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,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, 제3장은 주차장용지, 제4장은 지원시설용지, 제5장은 기타사항에 각각 적용한다.

#### 제4조 (지침 적용의 기본워칙)

-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시 도시계획 조 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.
-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.
- ③ 지침의 내용은 구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.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,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제295호(28)

④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5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- 1. "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"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.
- 2. 건축물의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"허용용도"라 함은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,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 내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.
  - 나. "불허용도"라 함은 관련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,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  - 다. "건폐율"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(대지에 2이상의 건축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을 말한다.
  - 라. "용적률"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(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을 말한다.
  - 마. "최고층수"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.
  - 바. "최저층수"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.
- 3.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목과 같다.
  - 가. "주조색"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.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29)

- 나. "보조색"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%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.
- 다. "강조색"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%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.
-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.
-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.

#### 제2장 산업시설 용지

### 제1조 (건축물의 용도)

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규제내용		
산업시설용지	하 용 모	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(A-1, A-2)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부대시설 ③ 세부업종별 배치계획 등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	
	불허용도	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②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,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③ 세부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	

제295호(30)

#### 제2조 (건축물의 밀도 높이)

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용적률	최고층수
건페율	최저층수

250	_
70	_

- ② 산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은 250%이하, 건폐율은 70%이하로 한다.
- ③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기업이 자유롭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.

#### 제3조 (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)

- ①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.
- ② 건축물이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cm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.

#### 제4조 (건축물의 색채)

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.

주조색	보조색	강조색
●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계통 ●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	●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●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 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 색으 로 할 것	●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(교차로 등)에는 때에 따라 원색계통의 순도 높은 색을 사용할 수 있음

#### 제5조 (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)

-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단 비상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, 주차하여야 한다.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31)

③ 개별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
#### 제3장 주차장 용지

#### 제1조 (주차장)

- ① 주차장용지는 원칙적으로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.
- ② 주차장 용지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규제내용					
주차장	허용 용도	①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자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)				
, , ,	불허 용도	①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

③ 주차장용지의 건폐율·용적율·높이는 결정도에 지정된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지원시설 용지

#### 제1조 (건축물의 용도)

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규제내용					
	허용 용도	① 사천시계획조례 제29조4호(제2종일반주거지역)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일부 (직원전용식당, 체력단련장, 휴게실, 기숙사, 녹지, 주차장)				
		② 세부배치 계획 등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				
지원시설용지		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			
	불허 용도	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				
		③ 세부사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				

제295호(32)

#### 제2조 (건축물의 밀도 높이)

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용적률	최고층수
건페율	최저층수

250	_
70	_

- ② 지원시설용지의 용적률은 250%이하, 건폐율은 70%이하로 한다.
- ③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민간이 자유롭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.

#### 제3조 (건축물의 배치)

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전면도로변 방향으로 하며,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권장한다.

#### 제4조 (건축물의 형태)

- ① 건축물의 높이는 연접건축물과 조화로운 층수를 권장한다.
- ② 1층부의 높이는 4m로 권장하고 지붕, 출입구, 계단실, 창문 등의 부가적 인 요소 디자인은 가급적 박공모양의 디자인을 의미하며 이웃하는 건축물 과의 통일성을 도모할 것을 권장한다.
- ③ 상가셔터형식은 투시형으로 하고, 사가출입부의 단차발생을 금지한다.
- ④ 보행의 편의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부에 에어컨 등의 설비 설치를 금지하고 냉난방시설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도시가시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하다.
- ⑤ 입면디자인시 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 (건축물의 색채)

- ① 가로변의 기존 건축물과 형태, 자료, 색채가 조화되도록 권장한다.
- ② 건축물 외장재료는 지구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.

③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기본적으로 유채색 계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

#### 제6조 (차량출입구)

- ①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. 단,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② 해당필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
#### 제7조 (장애인을 위한 계획)

다중 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한 장애인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함안군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.

#### 제5장 기타사항

#### 제1조 (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)

- ① 1개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②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소재를 활용토록 한다.
- ③ 간판에 네온, 전광, 점멸 등을 금지하고 가로형, 문자형, 지주형 간판을 권장한다.
- ④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,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 등에 따른다.

#### 제2조 (가이드라인)

-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.
- ② 산업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함안군과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.

제295호(34)

#### 제6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

#### 제1조 (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)

본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행위에 적용된다.

#### 제2조 (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)

-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제1종지 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.
-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,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#### 제3조 (경과규정)

본 지침 시행 전 건축 관련 승인된 사항이 본 지침과 상이할 경우 승인시기 와 관계없이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본 시행지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95호(35)

### 15. 지정(개발계획) 구역계 좌표조서

번호	X좌표	Y좌표	번호	X좌표	Y좌표
1	112662.3050	165505.7830	14	112766.3079	165191.6801
2	112710.2877	165477.3181	15	112763.3419	165190.9361
3	112753.3959	165484.6201	16	112631.5379	165342.1371
4	112795.6389	165406.1131	17	112611.0299	165381.2441
5	112797.8005	165407.2818	18	112616.6899	165428.4921
6	112834.3469	165330.8491	19	112675.4996	165486.3269
7	112838.5209	165333.1591	20	112662.2328	165339.6820
8	112850.6089	165301.7881	21	112672.0210	165328.3158
9	112847.5209	165299.2131	22	112715.8426	165277.4294
10	112838.1109	165299.2681	23	112765.1451	165320.0268
11	112815.8839	165276.6841	24	112772.7121	165326.5646
12	112808.6949	165264.6621	25	112786.3326	165338.3327
13	112768.4339	165193.8024	26	112791.4256	165289.8710

# 16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○ 관련도서는 사천시청(공단조성과) 및 사천시청(도시과)에 두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(관련도서 게재생략). 끝.

제295호(36)

〈붙임〉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O 토지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	적(m²)	소 -	유 자		소유	권 이의	리의 권i		비고
다킨	그세시	기 킨	415	공 부	편 입	성 명	주		성	병	주	소	-17
1	사천시 노룡동	888-3	장	8,878	8,878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1 26-1						
2	사천시 노룡동	888-5	장	1,453	1,453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26-1						
3	사천시 노룡동	976	도	470	364	국(건설부)							
4	사천시 노룡동	975-2	잡	13,071	13,071	국(재정경제부)							
5	사천시 노룡동	975	제	893	893	국(건설부)							
6	사천시 노룡동	882	임	843	843	국(재무부)							
7	사천시 노룡동	881	임	803	803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26-1						
8	사천시 노룡동	884	임	969	969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26-1						
9	사천시 노룡동	883	임	1,028	1,028	국(재무부)							
10	사천시 노룡동	879	임	1,025	1,025	국(재무부)							
11	사천시 노룡동	880	임	982	982	국(재무부)							
12	사천시 노룡동	876	임	1,012	1,012	국(재무부)							
13	사천시 노룡동	877	임	1,015	1,015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26-1						
14	사천시 노룡동	878	임	340	340	국(재무부)							
15	사천시 노룡동	874	대	2,750	2,750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26-1						
16	사천시 노룡동	875	대	321	321	임기오	사천시 / 58-6						
17	사천시 노룡동	888-9	대	1,208	1,208	임기오	사천시 / 58-6						
18	사천시 노룡동	849	대	2,060	2,060	임기오	사천시 / 58-6						
19	사천시 노룡동	354	대	2,259	2,259	임기오	사천시 / 58-6						
20	사천시 노룡동	859-1	도	2,308	140	국(농수산부)							
21	사천시 노룡동	941- 13	구	120	120	한국농어촌공사		의왕시 동 487					
22	사천시 노룡동	859	구	4,700	74	국(농수산부)							
23	사천시 대포동	457-9	잡	7,087	32	국(재정경제부)							
24	사천시 대포동	164-2	답	2,929	183	정윤문	사천시 : 611						
	합 합 계	ı		58,524	41,823								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37)

#### □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-3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

차장, 공원, 녹지, 유수지)사업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도 로 - 중로2-가호선 : L=400m, B=17.5m

│ 중로3-가호선 : L=131m, B=13m

└ 소로1-가호선 : L=67m. B=10m

나. 주차장 : A=894m²

다. 공 원 : A=856 m²

라. 녹 지 : A=6,123 m<sup>2</sup>

┌ 완충녹지① A=1,982m², 완충녹지② A=1,682m²

└ 연결녹지③ A=2.459m²

마. 유수지 : A=1,047 m<sup>2</sup>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삼원전기건설(주) 대표이사 임기오

나. 주 소 : 사천시 벌리동 26-12번지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

나. 준공예정일 : 2013. 12. 31.

6. 사 업 비 : 1.700백만원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불임

8. 관계도서 : 실음생략 (사천시청 공단조성과에 비치)

제295호(38)

#### [붙임]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 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면 ?	적(m²)	소 -	소 유 자		외의 권리명세	베
근인	조세시	시 빈	시독	공 부	편 입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미끄
1	사천시 노룡동	888-3	장	8,878	2,738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벌리동 26-12			
2	사천시 노룡동	888-5	장	1,453	498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벌리동 26-12			
3	사천시 노룡동	976	도	470	109	국(건설부)				
4	사천시 노룡동	975-2	잡	13,071	8,910	국(재정경제부)				
5	사천시 노룡동	975	제	893	323	국(건설부)				
6	사천시 노룡동	882	임	843	278	국(재무부)				
7	사천시 노룡동	881	임	803	326	삼원전기건설㈜	사천시 벌리동 26-12			
8	사천시 노룡동	880	임	982	85	국(재무부)				
9	사천시 노룡동	849	대	2,060	430	임기오	사천시 선구동 58-64			
10	사천시 노룡동	354	대	2,259	773	임기오	사천시 선구동 58-64			
11	사천시 노룡동	859-1	도	2,308	44	국(농수산부)				
12	사천시 노룡동	941-13	구	120	120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
13	사천시 노룡동	859	구	4,700	74	국(농수산부)				
14	사천시 대포동	457-9	잡	7,087	32	국(재정경제부)				
15	사천시 대포동	164-2	답	2,929	183	정윤문	사천시 노룡동 611			
	합 계			48,856	14,923					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39)

# 고 시 문

## 사천시 고시 제2012 - 178호

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1월 01일

## 사 천 시 장

점 용 자	성 명		한국농어촌공사 천지사장 하일규	주	소	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사천대로 1803					
하 천 명	용정천(	용정천(지방하천)									
	위 치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일원										
점용개요	면	면 적 영구 179㎡, 임시 812㎡									
· 심중개호	7]	간	(영구) 허가일로부터 영구 (임시) 허가일로부터 '12.12.30. 까지 (공사기간 : 2012.11 ~ 2012.12.30)								
	목 적 개	및 요	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연락교량 및 토출관로 설치 - 연락교량신설(L=36.2m, B=4.5m) - 토출관로매설(L=55.1m, D=0.8m, 매설깊이 = 2.0m)								

열람서류 : 위치도 및 관련서류 2부(건설과 비치)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40)

#### 사천시 고시 제2012-179호

##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 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2년 11월 2일

#### 사 천 시 장

- 1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번호 : 제2012-4호
- 2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년월일 : 2012년 11월 1일
- 3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송포동 1344-1번지선 공유수면
- 4. 점용 · 사용 허가 면적
  - $\bigcirc 1.302 \,\mathrm{m}^2$
- 5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사항
  - 점용·사용 목적
    - 당초 :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부잔교 및 관리사 - 변경 :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음식점
  - 점용·사용 기간
    - 당초 : 2009년 11월 1일~2012년 10월 31일 - 변경 : 2012년 11월 1일~2015년 10월 31일
- 6.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、주소

가. 성 명 : 박중군
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벌용길 47-25(벌용동)

7. 점용 · 사용 변경 허가조건 : 붙임 참조

#### 허 가 조 건

- 1. 기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본 협의 건은 기존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부잔교 관리동에 관광객의 편의 제공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건으로, 해양환경의 지속적인 보전 및 불시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.
- 2. 공유수면 점용·사용기간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준수하고,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- 3. 기존 시설물에 증축은 없으나, 공사 중 주변해역에 오탁방지막 등 저감대 책을 마련하여, 공유수면 상에 추락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4.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쓰레기(폐기물) 수거를 위한 분리수 거함을 시설물 주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.
- 5. 휴게음식점 운영 시 발생하는 오페수와 관련하여 육상부에 저장탱크가 마련되어 있으나, 주기적인 점검으로 저장탱크 누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6. 선박의 이·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유흡착포 등 해 양오염방제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.
- 7.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또한 동 시설물 설치에 영향을 받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- 8. 운영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화관광과)에 알려야 합니다.
- 9. 주로 다류,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·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「식품위생법시행규칙」제36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(접안용 관리사와 분리 등)을 갖추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(수상레저사업등록증 등)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 기간 내 영업을 조건으로 영업신고 수리 가능합니다.(단,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함)

#### 제295호(42)

- 10. 공유수면 점용·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될 경우 피 허가자 부담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.
- 11.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등록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를 득한 후 허가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, 목적 외의 사용을 하여서 는 안 됩니다.
- 12.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허가조건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
- 13.상기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,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허가조건 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
제295호(43)

#### 사천시 고시 제2012-180호

##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.

#### 2012년 1월 2일

### 사 천 시 장

- 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1-3호
- 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1년 5월 23일
- 3. 점용 · 사용의 목적
  - 사천시 서포면 송도~비토도 사이를 1992년 도로개설(지방도 1005 호선)로 인하여 해수유통이 단절되어 해양오염과 퇴적이 심화됨으로 써,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기존도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갯벌의 복원.
    - 가도(L=111m, B=8m) 및 가물막이(L=126.9m, B=4m) 설치
- 4. 점용 · 사용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-8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내역
  - 가도(L=111m, B=8m) 및 가물막이(L=126.9m, B=4m) 설치 후 철거 완료
- 6. 공사기간
  - 2011년 5월 23일 ~ 2012년 9월 25일
    - 동 사업 전체 공정 중, 가물막이(2012. 6. 5. 제거)와 가도부 (2012. 8. 14. 제거)의 공유수면 점용·사용부에 대한 공정은 2012. 8. 14. 완료
- 7. 점용 · 사용 승인(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)을 받은 자의 성명 · 주소
 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8.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: 2012. 11. 2.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44)

# 고 시 문

## 사천시 고시 제2012 - 185호

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1월 12일

## 사 천 시 장

점 용 자	성 명	사천시장 (재난관리과장)	주 소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						
하 천 명	사천강(	사천강(지방하천)								
	위 치	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11번지 일원								
zł 있 케 스	면적	적 영구 149.00㎡, 임시 378.82㎡								
점용개요	기 간	01.31. 까지 2.01.31)								
	목적및 개 요 사주·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토출관로 미 - 토출관로매설(L=9.0m, D=1.5m, 2개소) - 배수BOX(7.5*2.5*3.3, 7.5*1.25*2.3, 4.0*1.25*10.2, L=15.8m)									

열람서류 :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(건설과 비치)

# 사 전 시 공 보

제295호(45)

# 공 고

사천시 공고 제 2012- 715호

#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

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천시 비토리 일원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건과 관련한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0월 18일

### 사 천 시 장

- □ 심의내용
  - 일 시 : 2012. 10. 15
  - 장 소 : 시청 회의실
  - 심의자 :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 (8명)
  - 심의안건
    - 서포면 비토리 일원 별주부전 테마관련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의 건
    - 도로명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주체 결정의 건
- □ 심의결과 : 부결